

군산시 공고 제2020-2007호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찰청 소관법령 「청원경찰법」 관련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협조 요청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6337)

- 「청원경찰법」 제1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 기간(군입영,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승급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됨)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우리 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제10조에서는 일괄적으로 휴직 및 직위 해제 기간은 경력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따른 휴직 기간을 경력(재직) 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칙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의 경우 경력(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단서조문 신설(안 제10조)
- 군산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로 인해 징계 준용 기준 정비(안 제11조 제2항)
 - 군산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 입법예고 : 2020. 10. 5.~10. 26. (21일 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전화 : 454-2234 / 팩스 : 454-2228)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총무계(063-454-223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규칙 제 호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을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따라 휴가일수는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 및 제20조의**”를 “**다른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관련**”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계산)**”을 “**(경력기간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이법**”을 “**이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산시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하고**”를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준용하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align="center"><u>군산시청원경찰복무규칙</u></p> <p>제9조(휴가)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 휴가일 수는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 례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0조(<u>근무시간의 계산</u>) 봉급 산 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삽입 하지 아니한다. <u><단서 신설></u></p> <p>제11조(징계) ①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징계 처분한다. 1. 법령 또는 <u>이법</u>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하였을 때 2. ~ 5. (생 략) ②징계기준은 <u>군산시징계양정 에 관한규칙을 준용하고</u> 군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p>	<p align="center"><u>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u></p> <p>제9조(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따른 휴가에 관 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관련 -----</u> -----.</p> <p>제10조(<u>경력기간의 계산</u>) ----- ----- ----- --. <u>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의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u></p> <p>제11조(징계) ①----- ----- ----- ----- -----.</p> <p>1. ----- <u>이 규칙</u>-----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u>지방공무원징계규 칙을 준용하고,</u> ----- -----.</p>

군산시 공고 제2020-2012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녹지기금 존속 기한 도래(2020. 12. 31.)에 따라 향후 녹지공간 확보 및 5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 필요
- 간사를 업무담당 계장으로 개정하여 조직 개편 때마다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해야하는 행정낭비 해소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위원회 간사 담당자명 수정(안 제4조 제3항)

- 현 행 : 간사 도시숲계장
- 개정안 : 간사 업무담당 계장

나.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12조)

- 현 행 :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
- 개정안 :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우) 54078
- 전 화: 063-454-4453, FAX : 063-454-294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도시숲계(☎063-454-4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2.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숲계장”을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도시숲계장</u>으로 한다.</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업무담당 계장</u>-----.</p>
<p>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일</u>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5년 12월 31일</u>----- ----- ----- -----.</p>

군산시 공고 제2020-2013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 주사로 개정하여 조직 개편 때마다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해야하는 행정낭비 해소

2. 주요내용

가. 기금출납원의 담당자명 수정(안 제5조 제5항)

- 현 행 : 기금출납원 도시숲계장
- 개정안 :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계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우) 54078
- 전 화: 063-454-4453, FAX : 063-454-294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도시숲계(☎063-454-4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도시숲담당주사**”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관리) ① ~ ④ (생략)</p> <p>⑤기금운용관을 산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u>도시숲담당주사</u>로 한다.</p> <p>⑥ (생략)</p>	<p>제5조(기금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업무담당 주사</u>-----.</p> <p>⑥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2020-2018호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준공」 전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개편에 따른 법률적 근거 마련
- 상위법령 및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과 환경미화원 부상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른 폐기물 정의 삽입 등(안 제2조)
- 상위법령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삽입 및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세분화 (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에 따른 종량제 봉투(마대)의 신규 제작(제29조)
 - 종량제 봉투 ➡ **소각** , 종량제 마대 ➡ **매립**

- 환경미화원 재해 및 부상 예방을 위한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 및 75리터 종량제 봉투 신규 제작(제29조)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및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고시에 의해 징수(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2020. 10. 5.~10. 26. (21일 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454-3452 / 팩스 : 452-8166)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063-454-3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군산시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 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

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폐기물로 폐농약, 폐페인트, 폐형광등, 수은, 폐의약품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책무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청결유지 명령에 의해 1개월 범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소유자 등은 법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담장 설치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의 이행)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 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 기한 내에 적치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대집행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이 기록된 안내전단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시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은 소유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호수기준은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적환장설치) ①시장이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민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 쓰레기 운반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한하여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찾길사고 동물사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체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수집·운반·소요물량·대행기간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차폐시설)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초래, 작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작업의 효율성,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증진,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
4.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6조(대행자 사고가 있을 때)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

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1.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2. 소각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마대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마대에 담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대형폐기물로 간주하여 별표 1을 기준으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3.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앞면에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배출자의 주소·성명·배출일자 및 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신고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묶어서 신고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2에 따라 분리한 후 시장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및 마대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통해 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7. 생활계 유해 폐기물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 특성을 제거,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해 배출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약국이나 보건소에 모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종류별로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출신고접수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3장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수료 등

제18조(종량제 봉투 종류 및 재질) ①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용 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시장이 선정하되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분홍색(반투명),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⑤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산시 휘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게재와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형식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옅은 보라색으로 제작한다.

②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④시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①**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 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판매이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③**종량제 봉투(재사용 종량제봉투 포함)의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①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모형은 시장이 정하되, 군산시 심벌마크,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납부필증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

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약정 체결사항은 제25조제5항의 사항을 같이 적용한다.

③납부필증은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일정률의 판매이익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종량제마대 제작) ①종량제 마대(이하 “마대”라 한다.)는 매립용으로 사용하며 시장이 제작한다.

②마대의 종류 및 규격, 모형, 재질은 시장이 정하되 폴리프로필렌을 주원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마대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종량제마대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종량제 봉투와 마대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와 마대는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읍·면·동장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및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본청·사업소 및 읍면동이 참여하는 일제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공공용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종량제 봉투와 마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 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 및 대행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시장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와 마대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종량제 봉투(마대)의 판매·보고에 관한 사항

- 3. 종량제 봉투(마대)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 4. 위탁 및 대행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5. 업무위탁 및 대행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7. 기타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군산시로 전입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20매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하여 군산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거나 별표 3호의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소의 지정) ①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제2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 3.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판매자는 모조 또는 불법 제작한 종량제봉투 등을 진열, 판매 하여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유통을 발견 시 이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공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 2. 시장이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공급을 대행업자나 민간에게 위

탁하는 경우

3. 기타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8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였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4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2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금액에 의하여 징수하되 규격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마대)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이 허용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5. 제9조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500원으로 하며, 가구별 금액을 합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하고 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의한다.
 - 나. 제34조에 규정된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가 마을에 거주할 경우에

는 수수료의 부과대상 가구에서 제외하며, 종량제 봉투 무료공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다.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수료를 수시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0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종량제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시장과 당해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3조(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

-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 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 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5조(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매수)

- ①종량제 봉투판매소는 쓰레기배출자가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5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제36조(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시장은 “군산시 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하 “에너지화시설”이라 한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7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요구 할 때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38조(폐기물의 반입허용) ①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말한다.

②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유해폐기물은 법 제13조의 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반입한다.

제39조(출입 허용차량) ①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거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40조(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 ①반입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계량은 정문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시장은 등록된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계량, 기록, 관리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41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2. 기타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 등을 3일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출입 허용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지정폐기물 등의 반입금지) 시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유해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폐기물은 반입증서 확보 후 즉시 반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회사가 수집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의 반입자는 시장이 된다.

제44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하천하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거한 폐기물
- 2. 자연환경정화시 수거한 폐기물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45조(수수료납입 및 징수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46조(수수료사용) 징수된 수수료 수입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재활용사업
3. 자원재생산업 육성사업
4.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
5. 기타 시장이 청소행정 수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7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및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의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대집행) ①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자가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9조(운영규칙)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1조(의견진술)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5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5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59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포상금지급) ①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의 80퍼센트 한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8에 의한다.

제61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제1호에서 별표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량제봉투 및 마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관 또는 유통되는 기존 종량제봉투(마대)는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이 조례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유통·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가습기	모든 규격	무 상
개인용컴퓨터	모든 규격	무 상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무 상
냉장고	모든 규격	무 상
믹서	모든 규격	무 상
복사기	모든 규격	무 상
비디오 플레이어	모든 규격	무 상
선풍기	모든 규격	무 상
세탁기	모든 규격	무 상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무 상
에어컨디셔너	모든 규격	무 상
연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오디오	모든 규격	무 상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무 상
이동전화단말기	모든 규격	무 상
자동판매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다리미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레인지	모든 규격	무 상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전기밥솥	모든 규격	무 상
전기비데	모든 규격	무 상
가스·전기 오븐	모든 규격	무 상
전기 정수기	모든 규격	무 상
전기히터(팬히터)	모든 규격	무 상
청소기	모든 규격	무 상
탈수기	모든 규격	무 상
텔레비전	모든 규격	무 상
팩시밀리	모든 규격	무 상
프린터	모든 규격	무 상
기타 가전제품	모든 규격	무 상
금 고	대 형	18,000
	소 형	12,500
난 로	대	5,500
	소	3,500
마 네 킹	개 당	3,500
매 트 리 스	1 인 용	5,500
	2 인 용 이 상	10,000
문 갑	모 든 규 격	2,500
벽 시 계	대 형	4,500
	소 형	2,500
변 기	개 당	3,500
보 일 러 통	대 형	10,000
	중 형	5,500
	소 형	2,500
보 행 기	개 당	2,500
서 랫 장	5 단 이 상	4,500
	4 단 이 하	2,500
세 면 기	개 당	3,500
소 파	대 형 5 ~ 6 인 용	10,000
	소 형 3 ~ 4 인 용	5,500
	1 인 용 (개 당)	2,500
수 족 관	대 형	12,500
	소 형	4,500
식 탁	6 인 용 이 상	5,500
	6 인 용 미 만	4,5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신 발 장	모 든 규 격	2,500
싱 크 대	대 형	4,500
	소 형	2,500
오 락 기 기	대 형	6,500
	소 형	3,500
온 풍 기	대 형	12,500
	소 형	10,000
욕 조	개 당	4,500
유 모 차	개 당	2,500
의 류 (이 불 등)	마 대 당	2,500
의 자	대 형	3,500
	중 형	2,500
	소 형	1,500
장 룡	1 2 0 cm 장 1 쪽	18,000
	9 0 cm 장 1 쪽	12,500
장 식 대	모 든 규 격	4,500
장 판	1 묶 음 (2 0 kg)	2,500
재 봉 틀	개 당	2,500
진 열 장	대 형	5,500
	소 형	3,500
찬 장	모 든 규 격	3,500
책 상	양 수 , 대 형	5,500
	편 수 , 소 형	4,500
침 대	1 인 용	12,500
	2 인 용 이 상	18,000
카 페 트	1묶음(20kg) 초과	4,500
	1묶음(20kg) 미만	3,500
캐 비 닛	대 형	6,500
	소 형	4,500
칸 막 이 판 벨	개 당	2,500
피 아 노	어 프 라 이 트	12,500
	그 랜 드	18,000
화 장 대	모 든 규 격	3,500
폐 소 화 기	모 든 규 격	3,500

* 상기의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7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문 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병 - 농 약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꽂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 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 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이나 기름, 흙 등 이 물질이 묻지 않는 의류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이불,솜,커텐 등은 재활용이 안됨

[별표 3]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스티커(제25조제6항관련)

시 - 마크

전입자 확인 인증

이 종량제 봉투는 군산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군 산 시 장

☎문의전화 450-3450

○ 제작사양

- 가로 20cm × 세로 14cm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

[별표 4]

중량제봉투와 매립용 마대의 표준규격 및 세부사항
(제18조제5항 및 제19조, 제20조, 제24조 관련)

【소각용】

용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호칭두께(mm)	
			저밀도	고밀도
일 반 용	5	26×46.5	0.030	0.025
일 반 용	10	33×56.5	0.030	0.025
일 반 용	20	42×69.5	0.035	0.030
일 반 용 공 공 용	50	56×91.5	0.045	0.040
일 반 용	75	65×103.5	0.050	0.045

용도	용량	높이 (cm)	너비 (cm)	담는선 까지 길이(cm)	묶는선쪽 (cm)	묶는선 길이(cm)	손잡이끈 폭(cm)
재사용	10ℓ	53.5	36 (24+6×2)	12	7	12	5
재사용	20ℓ	65.3	45 (31+7×2)	15	8	15	6

【매립용】

구 분	용량(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밀 도(올5cm) 경사×위사	섬도(D) 경사·위도
매립용	20	42×69.5 (±2)	20×20 (±2)	850(±10%)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시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L)

소각용 종량제봉투(L)

- 일 반 용 -

- 공 공 용 -

Flammable Trash Only

Flammable Trash Only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 산 시 장

군 산 시 장

연락처 : 자원순환과
(☎454-3450)

연락처 : 자원순환과
(☎454-34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주) 1. 종량제봉투(마대)의 종류에 따라 “일반재사용(소각대상)”, “매립용”, “공공용”으로 각각 한글과 외국어 (영어, 중국어 등)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문안과 도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전면 또는 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에 필요한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매립용 종량제마대(L)
Non-Flammable Trash Only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뺨,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만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군 산 시 장

연락처 : 자원순환과
(☎454-34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손잡이형)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소 각 용 -
Flammable Trash Only



(시 로고) 군 산 시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빠,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 이 봉투는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되며, 상품을 담은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군산시 자원순환과 454-3450
- 제작 업체 고유
번호
또는 품질 인증
표시

[별표 5]

종량제봉투(마대) 공급·판매가격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용량 (l)	공급가격		판매가격	
	소각용 (원)	매립용 (원)	소각용 (원)	매립용 (원)
5	176	-	200	-
10	264		300	
20	440	880	500	1000
50	1,100	-	1,250	-
75	1,628	-	1,850	-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L\text{당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이익}$$

- (주) 1) 쓰레기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4) 판매수수료 요율은 12%를 기준으로 적용 $\langle (L\text{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 \text{봉투제작비}) \times 0.12 \rangle$ 산정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5) 판매가격은 원단위에서 절상함
- 6) 공급가격은 산출가격에 판매가격의 원 단위 절상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 결정

[별표 6]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형식(제22조제3항관련)



NO 005-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오천원(W500)
 군산시청



NO 01-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일천원(W1,000)
 군산시청



NO 02-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이천원(W2,000)
 군산시청



NO 03-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삼천원(W3,000)
 군산시청



NO 05-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오천원(W5,000)
 군산시청



NO 10-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일만원(W10,000)
 군산시청

종 류	지 질	규 격
5백원, 1천원,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초특강스티커	12.5*10cm

[별표 7]

설치대상 및 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재활용품 보관 창고

구 분	기 준	설치규모	조적조스라브 또는 외증	비 고
공동주택	100~300세대 미만	20m ²	“	
	300~500세대 미만	50m ²	“	
	500세대 이상	60m ²	“	
기타건물	1천m ² 이상~3천m ² 미만	6.6m ²	“	
	3천m ² 이상	9.9m ²	“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구 분	기 준	설치규모	재 질	비 고
공동주택	50세대미만	재활용함(4종이상)1조	스틸 스테인레스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건물용도에 따라 추가확보 조치가 가능
	50세대 초과시마다	1조씩 추가확보	“	“
기타건물	1천m ² 이상~2천m ² 미만	재활용함(4종이상) 2조이상	“	“
	2천m ² 이상~3천m ² 미만	재활용함(4종이상) 3조이상	“	“

쓰레기 수거박스

구분	기준	설치규모	재질	비고
공동주택	100세대이상~500세대 미만	쓰레기 수거 C/T 박스 1개	스틸	건물용도에 따라추가확보 조치가능
	500세대 이상	쓰레기 수거 C/T 박스 2개	“	“
기타건물	3천㎡이상~66천㎡ 미만	쓰레기 수거 C/T 박스 1개	“	“
	66천㎡이상	쓰레기 수거 C/T 박스 2개	“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분	기준	설치규모	재질	비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 (120리터)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20세대 초과 시	1개씩 추가확보	PE합성수지 폴리에스탈	

[별표 8]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0조제2항 관련)

행 위	과태료 (천원)	포상금상한 (천원)
○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 <삭제2007.01.02>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	160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	16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	4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0	8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0	8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500	4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0	8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0	400

※ 위 지급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9]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제6조제4항관련)

청결 유지 명령 대상 행위	명령 내용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청소 실시 기간 내용
2. 토지·건물내 쓰레기는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토지·건물내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 처리 ○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 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 소각잔재물의 수거 처리 ○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설치 ○ 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 내 출입 통제 조치 - 철조망 또는 담장 설치 등
	○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함 설치 및 청소체계 유지 관리
5.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210mm×297mm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입통지용)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영수필통지서 (시통보용)		영 수 증 (개인통지용)	
계 호	년도 일반회계	계 호	년도 일반회계	계 호	년도 일반회계	계 호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납부자 주소		납부자 주소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납부자 성명		납부자 성명		납부자 성명	
세입관		세입관		세입관		세입관	
과목항목		과목항목		과목항목		과목항목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수납날자도장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수납날자도장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수납날자도장 취급자	

(별지 제4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 사실	일 시		내용				
위반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 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특이사항

(별지제4호서식)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발행 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 사실	일 시		내용				
위반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 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 산 시 장

(별지제4호서식)
(을)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 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군 산 시 장

수납날자도장

(별지제4호서식)
(병)

(개인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 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급자인

(별지제4호서식)
(무)

(시통보용)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행

수납날자도장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군 산 시 장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 태 료 금 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시통보용)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안		⑦ 금 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 주소		⑪ 이 의 제기일	⑫ 법 원 통보일

군산시 공고 제2020-2019호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준공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주민지원 기금 조성 필요
- 「주민편익시설」 준공에 따라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개정(안 제2조)
- 기금 조성 기준을 반입폐기물 중량을 기준으로 개정(안 제3조)
-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 입법예고 : 2020. 10. 5.~10. 26. (21일 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454-3452 / 팩스 : 452-8166)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063-454-3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관리 등에”를 “관리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원 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2.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산시 매립장”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 3.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조성한다”를 “조성하며 2호의 반입수수료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반입 처리된 폐기물량과 반입 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설정 관리한다.”를 “설정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관리·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영 제18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거 군산시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2항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원사업 결정”을 “지원 사업 결정”으로, “지원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를 “지원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천재지변등”을 “천재지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70%범위 내”를 “70%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사업은 폐기물처리 시설 매립종료시”를 “지원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종료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한다.

제8조 중 “두퇴,기금운용관은 복지관광국장”을 “두퇴,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자원순환과장으로”를 “업무담당과장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1조에서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4.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7.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액 또는 감면비율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 결정한다.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 받은 일부 시설인 상가시설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⑤시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⑥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원금의 조성)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생략)
-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3. (생략)

제4조(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① 시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단서 신설>

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 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의 조성) -----

각 호-----조성하며 2호의 반입 수수료는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 반입 처리된 폐기물량과 반입 수수료를 곱한 금액-----
--

3. (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① -----

----- 설정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관리·운영한다. 단, 영 제18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거 군산시의회와 협의

②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은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사업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결정)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

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원 사업-----

-----.

③-----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6조(지원사업 결정) ①-----

----- 지원 사업 결정-----

----- 지원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

②-----

----- 각

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
업에 한한다.<본항신설 2004.0
4.16.>

- 1. 천재지변등의 재해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생 략)
- 3. 주민지원사업비중 70%범위
내에서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
류와 비율을 주민지원협의체
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매
립종료시까지로 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
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
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제7조의1(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
당)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호-----

- 1. 천재지변 등-----

- 2. (현행과 같음)
- 3. ----- 70%범위 내-----

③----- 지
원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종료 시-----.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 지원 사업 -----

제7조의2-----

거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처리과정등의 감시 활동에 대한 활동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 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복지관광국장이 되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시설담당이 된다.

제9조(회계관리) ① (생략)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신설)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

----- 두되, 기금
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
----- 업무담당과장
으로-----
-----.

제9조(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5조-----
-----.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제12조(신 설)

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4.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7.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액 또는 감면비

제13조(신 설)

율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 결정한다.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 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

어 수탁 받은 일부 시설인 상
가시설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⑤시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무
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
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⑥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
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
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
다.

제14조(신 설)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
익시설 운영자에게 주민편익시
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
다.